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15

발의연월일: 2021. 2. 4.

발 의 자:소병철・송기헌・신동근

김정호 • 백혜련 • 임호선

김승남 • 진성준 • 이학영

양향자 • 민병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고 있음. 또 법 개정안(법률 제17624호)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추가한 바 있음.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의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

함(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9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의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제22호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	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	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	
여 사용할 수 있다.	
1. ~ 22의2. (생 략)	1. ~ 22의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2의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	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
	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
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	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
	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
	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
	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
	재정 지원
23. (생 략)	2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